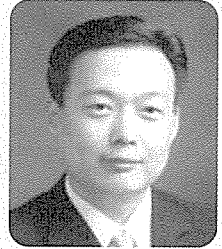


◆ 본고는 본회 인터넷 홈페이지(www.koreapork.or.kr) '양돈법률상담코너'에 게시된 질문과 답변을 정리한 것입니다... 편집자주 ◆



김태욱 변호사

## 토지소유주 변경에 따른 지하수 이용의 문제 문의

**Q** 10년 전 농장인근 토지 소유주와 합의하여, 지하수를 개발하여 토지소유주와 공동으로 이용하였으며, 그 개발비용은 본인이 부담하였습니다. 이전 땅 소유주가 땅을 매각하여 새로운 소유주가 공장신축계획을 세움에 따라 지하수를 폐쇄하고 묻으려 하지만 이전 토지소유주는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고 매각하였습니다. 지하수 공사 투자비용도 해결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보다 중요한 것은 용수공급문제 때문에 지하수를 계속 이용하여야 하는 처지입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할 수 있나요?

**A** 현재의 소유자 이전에 이미 전 소유자의 합의에 따라 지하수를 개발 및 이용하고 있었으며, 인근의 다른 지역에 다른 지하수를 이용할 수 있는 원천이 없다면 귀하는 기존의 개발된 지하수를 계속하여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단 지하수의 이용에 따른 사용비용이나 공장건설에 의하여 수도관 시설을 별도로 설치하여야 할 경우 그 비용은 귀하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잘 협의해 보시고 만일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는다면 법원에 조정을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 퇴비업자와의 계약해지에 관한 문의

**Q** 5월 초경 톱밥을 농장에 공급하고 있는 퇴비업자에게 농장 내에 있는 돈분을 5월 말까지 치우기로 위탁처리 하였습니다. 작업비 5만원과 거름을 가져가는 조건 구두상 계약했습니다. 문제는 돈분 작업을 하다가 포크레인으로 건물 트라스를 건들면서 시작됩니다. ks파이프가 찢어질 정도로 건드려 났습니다. 구겨진 것만 약 200개 정도됩니다. 그래서 고쳐주기 전에 거름 못가져 간다고 일단 내보냈습니다. 약 일주일이나 지나 고쳐주려 왔는데 돈분을 치웠다고 법대로 한다더군요. 돈분은 제가 다른 퇴비장을 옮겨 놓았고 공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5월 말까지 작업을 끝내고 6월 초부터 공사가 들어간다고 업자에게 구두상으로 시작전부터 여러 차례 얘기한 상태고요. 업자는 고쳐줄테니 거름을 그대로 내놓으라고 합니다. 이 업자와 계속 거래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럼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요약 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 5월 초, 5월 말까지 돈을 치워 주기로 구두상 계약체결.
2. 건물 트라스 망가짐, 약 20여개 지붕재인 페트라이트도 조금씩 부서짐.
3. 수리 한다고 와서 거름을 치웠다고 법적 소송을 한다고 주장.

제가 원하는건, 이 업자와 더 이상 거래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사안이 명확치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일단 손해를 받은 쇠파이프 등을 사진 촬영하여 증거자료를 확보해 두고, 그 업자로부터 망가진 쇠파이프를 고쳐주겠으며 만일 못 고칠 경우 얼마를 배상하겠다는 확인서를 받아 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일 이 번 돈분처리에 대한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하겠다는 당사자는 쌍방에게 피해가 있는 부분을 배상해 주어야 합니다.

## 거름 저장에 관한 문제 문의

**Q** 폭기조 정화조를 가동하고 있는 농장입니다. 정화조는 수질기준치에 문제없이 가동하고 있습니다. 제가 출타 중에 관내 맑은물 보전과에서 다녀갔다고 하는데요. 축분뇨 처리가 잘 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그냥 지나갈 수 없다고 합니다. 정화조는 정상가동 중이며, 분은 퇴비사에서 정상적으로 발효시키고 있는데, 퇴비사 옆의 빈공간(밭)에 좀 쌓아 두었습니다. 조만간 저희 밭에 거름으로 뿌릴겁니다. 그런데 이미 생축분이 아니고 왕겨로 비벼서 이미 발효시킨 퇴비를 밭에 뿌리기 전에 임시로 두었는데도 법에 저촉이 됩니까? 그분들 이야기가 비가 오면 거기서 나온 물이 어디로 흐르겠냐구 하는데요. 그러면 밭에 거름으로 뿌린 다음 비가 오는 것과는 무엇이 틀린지 모르겠습니다. 이럴 경우, 당사자의 해명이나 설명없이 일방적인 과태료 처분이 가능합니까?

**A**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하면 해당 관청은 귀하에게 퇴비화 시설과 관련하여 보고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는 발효가 이미 완료된 퇴비를 사용하기 위하여 밭에 임시로 잠깐 두었고, 비가 와도 침출수가 유출되지 않는다는 취지를 잘 설명하시고 그 퇴비를 옮기는 날짜를 제시하여 문제를 최소화하여 과태료를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양국**